

자주 묻는 질문과 답(FAQ)

서류 미비자 자녀들도 뉴욕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까?

네. 뉴욕시의 모든 어린이들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공립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만 4세이거나 만 4세가 되는 아동들은 유아원(Pre-K)에 입학할 수 있으며, 모든 뉴욕시민들은 만 5세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혹은 만 21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 말까지 공립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은 체류 신분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들이 체류 신분에 관해 알게 된다 하여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서류 미비자여도 제 자녀의 학교를 방문할 수 있습니까?

네. 뉴욕시 공립학교를 방문할 때에는 사진이 부착된 공식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뉴욕시에서 모든 뉴욕거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무료 ID 카드인 IDNYC를 받아줍니다. IDNYC는 체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IDNYC 카드를 발급 받으시려면 www.nyc.gov/idnyc에서 사인업 하십시오.

저는 미국 시민권이 없습니다. 제가 추방될 걱정을 해야 할까요?

이민법은 매우 복잡하며, 개개인의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최근의 이민 관련 발표 내용이 귀하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실치 않다면, 귀하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311번으로 연결하신 뒤 “ActionNYC” 라고 말하시면, 무료로 안전하게 이민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출신입니다. 이들 국가 출신자들에 대한 반이민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걱정해야 할까요?

뉴욕시의 모든 어린이들은 출신국가에 상관 없이 공립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이 이것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최근의 행정명령이 귀하 또는 귀 가족의 미국 체류 능력, 또는 여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 되신다면 311번으로 전화하신 후 “ActionNYC”라고 말하시면 무료의 안전한 법률 상담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현재 공항에 억류 중인 가족이 있거나 억류된 사람을 알고 있어서 반드시 응급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844-326-4940번으로 연락하시면 JFK 국제 공항에 파견되어 있는 자원봉사 변호사와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민 관련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까?

뉴욕시는 최근 이민 관련 명령에 관한 아무런 조치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 관련 조치는 연방정부에서 실시합니다. 뉴욕시에서는 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시민을 안전하게 포용하기 위하여, 이민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기타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안심하고 전화해도 됩니까?

네. NYPD는 범죄 피해자, 증인, 또는 기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체류 신분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증오 범죄를 포함한 어떤 범죄라도 피해를 입으신 분은 전화 911로 NYPD에 신고하시거나 NYPD 증오범죄 태스크포스(Hate Crimes Task Force) 직통전화 (646) 610-5267번으로 연락 하십시오.

이민에 관한 법적 도움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 311번으로 연결하신 뒤 “ActionNYC” 라고 말하시면, 무료로 안전하게 이민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자격증을 갖춘, 믿을만한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저와 저희 가정에게 제공되는 뉴욕시의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립교육이나 보건시스템, 또는 기타 서비스 등,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모든 뉴요커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여기에는 서류미비 상태인 이민자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뉴욕시 직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귀하의 체류 신분에 관한 기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IDNYC** – IDNYC는 뉴욕시에서 모든 뉴요커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IDNYC는 체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카드 발급을 위한 예약은 www.nyc.gov/idnyc에서 하십시오.
- **의료보건**
 - 저비용의 응급 또는 비응급 의료 서비스가 모든 공립병원과 클리닉 및 기타 저렴한 비용의 클리닉에서 제공됩니다. 311로 전화하여 더욱 상세한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 NYC Well은 하루 중 어느 때고 200개 이상의 언어로 무료 정신건강 서비스와 연결시켜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전화 1-888-NYC-Well, 문자 WELL 를 65173번으로 보내시거나, 웹사이트 www.nyc.gov/nycwell를 이용하십시오.
- **탁아 서비스** – 생후 6주에서 12세까지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에서는 무료 또는 저비용의 탁아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1로 전화하여 더욱 상세한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 **비상식량 및 보호소** – 뉴욕시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필요하신 분들께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홈베이스(Homebase) 프로그램은 뉴욕시민들이 쉼터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311로 전화하여 더욱 상세한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제 자녀나 제가 차별, 혹은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뉴요커들은 직장이나 주거지, 공립학교를 포함한 공공 장소 등에서 불법적인 차별, 보복,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신고를 하시려면 학교의 Respect for All (RFA)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거나 전화 311번, 또는 NYC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핫라인 전화 (718) 722-3131번으로 연락하십시오.